

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

규정 · 소관 학생상담센터 · 현행 규정

개정 2025. 10. 13. · 시행 2025. 9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12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7:48:52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**≡** 직제규정 **≡**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〈전면개정 2025-10-13〉

제2조(업무)

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심리상담(개인상담, 집단상담) 및 심리검사
2.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
3.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·만족도 조사 및 연구
4.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환류
5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〈전면개정 2025-10-13〉

제3조(조직)

센터는 상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, 직원, 연구원, 상담사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〈전면개정 2025-10-13〉

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,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.
- ③ 학생처장, 학생상담센터장, 학생상담센터팀장, SU인권센터팀장, 생활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임명직 위원은 교내·외 전문가 또는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〈전면개정 2025-10-13〉

제5조(운영위원회 회의)

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〈전면개정 2025-10-13〉

제6조(환류)

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(사전조사,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, 프로그램 진행, 평가 및 사후관리, 결과분석 및 환류)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.

제7조(시행세칙 및 지침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센터의 명칭을 1999년 3월 1일부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로 변경한다.
4.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센터의 명칭을 2020년 3월 1일부터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학생상담센터로 변경한다.
10.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.
10.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.